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7. 11.(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2차 및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전> 3건과 <보고안전>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 정책국, 이용자정책국의 안전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8-35-38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전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광주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광주방송입니다. ‘16년 3월 30일 방통위에 KBC 제2FM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7년 3월 9일 과기부로부터 기술심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8일 광주방송이 방통위에 허가신청서 추가 보정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17년 4월 5일 방통위에 전북극동FM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과기부에서는 ‘18년 6월 28일 기술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6월 28일 극동방송은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보정 제출하였습니다. (재)기독교방송입니다. ‘17년 5월 29일 방통위에 광주음악FM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년 4월 27일 과기부는 적합 판정을 통보하였습니다. 6월 28일 기독교방송은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보정 제출하였습니다. 신청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 신청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각각 (주)광주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이 되겠습니다. 광주방송의 신청 내용은 제2FM방송국으로서 광주광역시와 함평군, 담양군 일대를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전북FM방송국으로서 전주,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정읍시 일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기독교방송이 신청한 내용은 광주 음악FM 방송국으로서 광주광역시 일원과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을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신규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방송편성 및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로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법률·기술·시청자·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신규허가 여부, 신규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결정하고,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배점이고,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다만 지역 FM라디오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해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과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여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에 청취자 의견을 접수하고 8월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여 9월에는 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는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방송 같은 경우 최초 허가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2년 3개월 만에 허가 신청이 논의가 되는데, 다른 방송들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광주방송이 2년 이상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경과사항을 주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16년 3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고, 저희가 다음 날 바로 과기부에 기술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

허가가 나가려면 과기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기부에서 1년 정도 기술 심사기간이 소요가 됐고, 주파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일부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과기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16년 3월 31일 과기부에 기술심사를 의뢰했고 작년 1년 정도 지나서 과기부에서 기술심사 결과를 회신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로 '16년 3월 30일 받았던 사업계획서 내용과 약 1년이 지나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광주방송에서 1년 동안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방송에서 이 사업계획 내용을 최초 '16년에 제출했던 것보다 많은 변경사항을 보정했고, 최종적으로 올해 6월 28일 최종 신청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보니까 극동방송, 기독교방송도 과기부 기술심사가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허가 신청서 추가 보정 등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 쪽에서 나온 걸림돌은 없었고, 저희가 보정서 내용을 살펴보니 최초에 냈던 사업계획서와 1년 정도 지나니까 법인의 재정 경영상태도 많이 변경되었고, 인력이나 운영에 대한 수정사항과 광주방송 내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니까 계속 지역방송사들이 FM방송을 개설하겠다고 허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광주방송도 음악방송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종합편성FM입니다. 지금 음악방송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편성FM을 하고 있는 민방은 부산지역에 있는 KNN이 종합편성FM을 하고 있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FM에서 뉴스도 한다는 것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뉴스, 교양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가 위원님들 알고 있는 KBS와 MBC에서 하고 있는 표준FM 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으로도 계속 다른 민방들도 이런 종합편성 FM을 갖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뉴스편성도 하고 종합편성 하기 때문에 심사를 다른 음악FM, 그것은 단조롭게 음악만 방송하는 것이니까 또 극동방송 같은 경우 선교방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극동방송 같은 경우 광고방송을 하지 않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를 합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법에는 규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지금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다른 방송사는 음악방송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은 심사를 좀 더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FM 방송이 새로 신규로 허가를 받으면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세 군데 신청한 방송국이 광주방송을 제외하고 다 라디오전문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광주방송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추가로 소수의 인력만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도 심사할 때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방송사에 새로운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추가 인력 없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사에서 상당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투자계획도 없이 방송사 채널을 하나 더 늘린다면 그만큼 인력 보충 없이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더 강해지고 방송사도 앞으로는 주52시간 근무에 해당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을지, 인력 보충은 잘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았냐 하면 지금 SBS와 제휴 네트워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방송 같은 경우도 SBS 표준FM 콘텐츠를 67% 정도 받고 있는데, 광주방송도 전체 편성의 자체편성은 33% 정도 되고 67%는 SBS와 제휴를 해서 링크 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FM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FM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광주방송 쪽 기술심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다시 보정요청을 한 것이 '신청서 제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내용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수정하여 반영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많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보정을 계속 해 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또 많이 바꾸었다는데 거기 인력운영에 관한 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편성내용에 자체편성비율이 33% 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심사과정에서 인력 부분과 재정 부분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갈수록 지역방송사들 신규허가 신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 부분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되고 또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체편성을 많이 해야만 지역성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력 보충을 우리가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기존 방송사업자가 채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기존 채널 권역을 넓히기 위한 신규허가 계획에 관한 것이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모든 안건은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의해서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신규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지역과 종교방송 라디오의 지속적인 허가를 두고 라디오의 난개발이라고 비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방통위가 라디오의 디지털화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와 관련해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 정책목표로 올해 발표한 것에 라디오진흥자문기구를 올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연두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 있고, 관련 전문가로 해서 라디오진흥연구반을 구성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라디오진흥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자문기구가 연말까지는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라디오진흥자문기구의 역할과 자문기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문기구라는 기구만 하나 설치해서는 기구 하나 설치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 부여 및 역할과 법적인 근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향후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광주방송의 제2FM 심사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방 가운데 이미 부산KNN이 종합편성으로 2FM을 허가받았고 이번에 광주방송이 신청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대구와 대전민방도 과기정통부와 주파수 배정에 관련된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고 제2FM 신규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의 제2FM이 단순히 SBS의 러브FM를 수중계해서 그야말로 SBS 라디오의 전국화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합편성라디오로서 지역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필요성, 그것을 철저하게 구현할 수 있는 로컬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광주시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서울올림픽대로 교통상황을 듣는 이런 상황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난청 개선을 위한 해소계획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차후 지역민방 2FM의 추가 허가 문제에 관련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방송사들이 필요할 때는 지역의 문화 창달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허가 시에는 그렇게 계획서를 써 내고도 허가를 받으면 중앙방송의 수중계를 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이 허가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게 허가시에 잘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방송사들이 허가받은 후에 그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도록 특별히 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35-381)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개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번 「방송법」 일부개정 경과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5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2건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3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경과입니다. '18년 4월 20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고, 최종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비규제 대상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방송법 제18조제4항 개정 따른 방송 연장명령 대상사업자 변경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 연장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방송 연장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올 8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허가·등록·취소되거나 특히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준 가장 큰 취지는 시청자, 이용자 보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된 사업자의 양수·양도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도가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은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고 재허가·재승인이 안 된 사업자에 대해서 1년 동안 방송을

유지·재개하면서 시청자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하나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재허가나 재승인이 불허된 사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절차들은 고민을 더 해 주어야 합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업자들 재허가·재승인할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650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 보호라는 이유로 그냥 관례적으로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해 줬습니다. 최근에도 사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자에 대해서 꼭 재허가·재승인 해 주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보호방안이 불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재허가·재승인을 해 준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할 경우 재허가 사전동의를 해 오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시청자 보호라는 이유 하나로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해 주는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앞으로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훨씬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저도 좀 전에 고삼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방송을 계속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보낸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연장할 때 준비할 사안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허가·재승인이 취소되고 거부가 되면 아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양도에 관한 명확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고, 앞으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거부도 꼭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인수 문제도 염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3기 방통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매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회의록 확인해 보면 다 있으니까요.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일련의 통합 방통위, 현재 방통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사업권을 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근근이 방송은 계속 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역방송을 가보니까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됐든 사업권을 받고 지금 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형편없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제3기 때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매체로서 수명이 다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통사업 같은 경우도 와 이브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권을 회수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런 정책들을 과기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매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바일 방송을 도입할 때는 향후 시장에서 다른 매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상파를 통한 서비스를 고민했는데 그 이후로 모바일 방송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 리고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거나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판단에 따라서 미디어 매체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업권 회수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3기 때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내년 연구과제로 삼아서 먼저 연구부터 한 다음에 이후 대책을 필요하면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후속절차에 대해서 양수·양도, 인수·인계 이런 것까지 잘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 미이행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 미이행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시 복지TV에 대하여 부가한 인정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정조건의 내용은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장애아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복지TV는 인정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복지TV 설립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5편, 장애아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8편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복지TV는 인정조건 이행실적을 제출하였는데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9.9%,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은 3편,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4편 모두 계획에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사무처는 3월 13일 복지TV의 소명을 요청하였고, 3월 28일 소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인정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방안 관련 법률·회계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한 복지TV의 소명 내용입니다. 화면해설방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방송 고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장애인 방송제작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해 자체 투자금만으로 화면해설방송의 고비용을 유지하기 어렵고, '17년도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지상파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10%와 비교해도 크게 뒤쳐지지 않는 실적이며, 2017년 12월부터 신규 프로그램을 수급하여 2018년 3월까지 연평균 15%의 화면해설 방송 비율을 유지, '18년도에는 인정조건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장애인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행계획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추가 제작하였고 장애인식교육 및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처 검토의견입니다. 복지TV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고려궁 등에 현재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약 5억원가량을 장기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인정조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인정취소 등을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18년 인정조건에 대해 3/4분기

까지 이행실적을 미리 점검하여 금년 11월에 있을 '19년도 인정심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17년, '18년 인정조건 위반여부 및 부적절한 지원행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인정조건 위반 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처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복지TV가 사실상 장애인 관련 방송으로는 독점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재는 관련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05년에 설립되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허가나 재승인이 아니고 복지TV의 인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인정하게 되면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의무 송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인정조건 이행계획을 상당히 이행하지 못하고 미달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행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아까 보고하셨지만 고려궁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수원을 운영하고, 또 인력 송출회사, 토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복지TV가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사업체를 거느리고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복지TV에 재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장애인을 위한 방송비율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를 벌이고 있으면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려궁 전통한옥호텔 그다음에 인력송출회사 이런 회사들이 장애인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투숙하는데 할인율이 높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장애인 관련 단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일견 이해가 가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설 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지TV에 경고를 해서 특수관계자 아십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이런 지원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촉구할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17년도 인정조건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공문 으로 통보하면서 지금 부적절한 지원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환수를 하든지 이자를 내고 언제까지 환수를 하도록 계획을 제출해서 이행하도록 공문 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하니 결국은 매년 있는 인정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문행위를 빨리 해서 그런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올 연말에 있을 다시 인정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개인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고 또 장애인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관계자 지원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오늘 보고된 안건이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송출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정조건 이행계획을 점검한 사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고 또 점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서 복지TV 소명내용을 보면 방송법에 의해서 의무송출을 보장받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지녀야 할 공적 책임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방송 고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방송 고시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복지TV 측에서 고시 사업자 선정 충족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나 실사 요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복지TV가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을 15%로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송출 장애인복지 전문PP로서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9.9%로 크게 미달했는데 이 편성비율이 지상파방송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부회입니다. 거기다가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비율도 60%이고,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맡아야 될 본연의 역할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서 또 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8개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 서도 계열사인 한옥호텔에 무이자로 5억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특수관계자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심각하게 듭니다. 현행 법령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TV에 대해서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령 개정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법 개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개정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고시 이행실적 점검을 명문화시켜서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사업자가 제시한 스스로의 이행계획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부가한 특정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제대로 검토를 더 많이 해서 충실히 이행되고 조건이 또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방송사업자들이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규제기관에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범주 안에서 하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검토해서 이 사업자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허거나 승인이나 또는 재허가·재승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사한 안을 내놓고 일단 받고 나면 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행사(제7회 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가 있어서요.

(고삼석 상임위원 퇴장)

6-1.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35-382~39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이용자정책국 소관 안건인 <의결안건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등을 위반한 10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3> 조사개요, <가> 조사배경입니다. ‘17년 2월 숙박업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8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노출사고를 신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나> 조사대상 10개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현장조사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은 5월 17일까지 받았습니다. <4>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 유·노출 경로 및 내역입니다. 먼저 네이버네트워크는 여행사입니다. 해커의 SQL인젝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혼여부 등 55,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인프렌즈는 캐릭터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서버 캐시 설정 오류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닉네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1,325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모바일 앱의 소스코드 오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아이디,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537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보험대리점 사업자입니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4,075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엔비즈소프트는 쇼핑몰 제작 솔루션 사업자입니다. 해커가 관리자의 로그인 인증값을 탈취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자는 이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99개 쇼핑몰 사업자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명,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193만 7,0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은 여행사입니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회사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47만 9,0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자동차용품 회사입니다. 해커가 웹사이트 취약점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디,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2만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지에이엠은 경마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름, 아이디,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 73,0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콘텐츠월드는 여행사입니다. 역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124,0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투어로도 여행사입니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이메일, 여권번호 등 201,0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네이버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지연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그리고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라인프렌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하였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역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입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개인정보 유출 지연신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위반, 암호화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위반 등 모두 5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엔비즈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지연신고, 접근통제 위반입니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은 주민번호 사용 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지연신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와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입니다. 지에이엠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개인정보 파기 위반입니다. 콘텐츠월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암호화 위반, 개인정보 파기 위반 등 모두 4건 위반입니다. 투어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와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모두 3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먼저 라인프렌즈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연동되어 복잡하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오류로 사전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유명 아이돌 상품의 판매를 앞두고 동시 접속자 급증을 예상하여 서버를 증설하면서 캐시 기능을 새로 추가하여 캐시에 저장된 정보 일부가 타인에게 노출되었지만 시험과정에서는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수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신고접수를 통해 1차 개인정보 노출을 인지하고 새로 추가한 캐시 기능 설정을 해제하여 문제는 해결했지만 1월 15일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시 이를 해결하면서 실수로 기존 캐시 기능이 재설정되어 2차 노출된 것이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일곱 번에 걸친 시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 사전에 개발자가 프로그램 오류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앱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이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심인의 일곱 번의 시험을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시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인과 카드결제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성능 시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5개 사업자는 경찰청 유출사고 조사를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했지만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또 방통위 조사 시 신고 안내를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이용자 통지 및 보호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개선하는 중이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네이버 네트워크 등 3개사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였거나 개선하는 중이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6>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은 네이버네트워크 등 10개사에 대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을 명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네이버네트워크 등 10개사에 대해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어서 기준금액을 유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종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네이버네트워크는 4개사에 대해서는 역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으므로 4개사에 대해서 최종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을 한 네이버네트워크 등 10개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병과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네트워크 등 8개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접속기록과 로그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유출경로와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그리고 라인프렌즈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2개사는 개인정보 노출규모가 작고, 해킹에 의한 노출이 아닌 인증값의 오발송으로 발생한 노출인 점,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이용자의 피해가 없거나 보상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로 부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6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없는 엔비즈소프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네이버네트워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 엔비즈소프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에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사에 대해서 과태료는 각 1,0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사업자별 최종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과태료는 10개사 모두 합해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통보 후 하반기에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아주 유명한 커피점인데 전국에 걸쳐 종업원수가 13,000명이 넘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작년 매출을 보면 1조 2,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커피전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건수는 537건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대형업체가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위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신규 버전을 까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데 로그인 할 때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신규 버전의 앱을 다운받아서 로그인할 때 인증값을 주고받게 되는데 타인의 인증값이 전송되어서 아마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포인트 등이 자기 앱상 나타나서 그것을 일부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인데 피해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24만원어치 정도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피해액은 경미하고 노출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업체가 그런 보안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소명을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인증절차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신규버전을 깔도록 해야지, 그런 오류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의식이 그만큼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조 2,000억원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해서 무슨 경고가 되겠는지 의심스러운데 국장님, 이런 경우에 대형 매출을 올리는 대형업체에 과태료를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대리점·유통점을 대형과 소규모 사업자로 나누어서 했는데, 망법에는 그런 조항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토종업체가 아니고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도 보안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한번 위반이니까 1,000만원으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중 처벌해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려면 개인정보 보안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조금 잘못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시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 여부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영세업체와 같은 식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제도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는 오늘 이 안전 보고에서 눈여겨본 곳이 어디냐 하면 엔비즈소프트입니다. 쇼핑몰 솔루션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약 194만명이 누출되었는데 솔루션업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왜 유출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해커가 관리자의 로그인 인증값을 탈취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99개 사업체에서 쇼핑몰 이용자의 관련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엔비즈소프트는 직원 4명에 3억 4,000만원 매출입니다. 제대로 된

보안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단지 돈만 벌고 있고, 그리고 관련 솔루션 이용업체가 늘어난다면 완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쇼핑몰 솔루션업체들이 과연 몇 곳이나 있고 어떤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고 솔루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런 식의 대량 유출의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다가 부당 결제 우려의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분야는 업체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훨씬 더 가중처벌의 필요성도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엔비즈소프트의 경우에는 이용자 통지의 경우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99개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통지하라고 안내하고 나머지 50여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자들에게는 알렸지만 쇼핑몰 솔루션을 사용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 솔루션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검토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관련된 쇼핑몰 사업자가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쪽 사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고지하면 우리 쇼핑몰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일부러 고지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그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짜 엄청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는 사업체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다 다루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강한 조치들이 가야 보호가 되고, 앞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텐데 이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도, 경제적 징벌하는 것도 기준을 다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사업자들을 보면 매출이 10억원대에 아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조 2,000억원이 넘는데 규모에 비해서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다, 이것은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사전에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사전에 막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수단이라는 것이 시정 명령, 과태료, 과징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과징금은 법·제도상으로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과거에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그리고 지금 정액과징금은 4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억원 이하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수단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금년에 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더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는 더 철저하게 하되, 빅데이터는 산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이 미진하다면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3%와 10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EU의 GDPR에 비하면 전체 매출액 4%에 2,000만 유로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너무 적은 편인데 법이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엄하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는 좀 더 엄하게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1. 보고사항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신고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3월에 위치정보법 개정 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거쳐 마련된 과방위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 관련되어서 주요 경과는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5월과 6월에

걸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실시했고,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절차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이원화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변경신고, 양도·합병·분할 신고 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해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이용약관 공개의 세부 방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조항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약관 공개 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통신단말장치라고 함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이용약관 공개 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경보발송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 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통계자료 제출 방법을 기존에 방통위가 제출받아온 방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정보사업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월별 건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월별 건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는 있었으나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통위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승인이나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고, 우선 제재처분 기준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신설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변경신고, 양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8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사안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벤처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한 시행령 개정안이기에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입니다.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할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급한 자료인지, 통계자료라고 한다면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두 군데에 제출하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상임위 명칭이 바뀐다거나 다른 사안이 되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동 사안은 최명길 의원님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정보와 관련된 통계 자료 제출은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경찰관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문제를 국회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건수를 국회에 보고하고, 또 경찰관서는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월별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만 제출하던 통계자료까지도 법적으로 의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의 제출은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내면 각 의원들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실 제출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7분 폐회 】